

■ 법률 칼럼

## 취업이민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단계와 실제 이민 신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 1. 구인광고의 적절성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미국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노동승인 단계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미국 내 거주자(미국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자를 고용주회사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미국 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주회사로 오는 모든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현재 고용주 회사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합니다. 고용주는 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노동승인 과정은 미 노동부가 고용주가 적절하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보내진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 2.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

또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

용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하려고 하는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 그 위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회계사(CPA)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미 노동부는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직종의 한시성(finite)

노동부는 노동승인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한시적(finite)으로만 필요한 직종인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의 비지니스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광고 요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도록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직종을 정하실 때도 고용주회사가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직종이 영구적 지속적으로 고용주회사에 필요한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승인의 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Audit)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잘 준수해 강화된 심사와 감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 대장암 검진 (colorectal cancer screening)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대장암은 특히 정기검진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대장암의 경우 작은 대장용종에서 시작되어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암으로 자라기 때문에 미리 대장내시경으로 발견을 한다면, 암으로 발병하기 전에 미리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검진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대장암 발병률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국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이면서 또한 세 번째로 암 관련 사망자수가 높은 암입니다.

2021년 5월에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에서 대장암 검진 가이드라인을 바꾸었습니다. 기존 50세에 대장암 검진을 시작하는 것을 45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 케이스는 50세 이후에 생기지만, 암 조기 발견의 장점과 조기 검진의 부담을 고려해 보면 45세에 대장암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장단점을 생각할 때 균형에 맞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침입니다.

대장암 검진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FIT (fecal immunochemical test)이라 하여 대변

검체를 매년 검사하는 방법, 대변 DNA test를 3년마다 하는 방법, CT 대장조영술 혹은 굴곡 S결장경 검사를 5년마다 하는 방법, 그리고 대장내시경을 10년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변 검사나 CT 대장조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반드시 후속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대장암 검진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그 결정은 환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장암 위험도가 평균인 사람은 보통 75세까지 검진을 계속하라고 권장하고 있으며, 76세에서 85세까지는 주치의와 상의 하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85세가 지나면 대장암 검진의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주치의와 상의 후 검진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